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 12. 6. 규칙 제1050호
개정 2008. 7. 18. 규칙 제1240호
개정 2009. 6. 24. 규칙 제1262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0. 21. 규칙 제140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0. 26. 규칙 제1580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22. 7. 4. 규칙 제1617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제2조(호외의 발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호외규격은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제3조(명예기자증 발급) ① 시정소식지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4조(광고내용) ①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광고는 공익광고와 유료광고로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는 공익을 해치지 않고 주민생활에 유익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추 1)

5. 그 밖에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광고게재신청)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시정소식지발행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광고개재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7조(광고게재심의) 시장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된 광고내용의 제한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의 제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광고를 2개월 이상 연속 게재 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제9조(광고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1.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한 광고
2.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0조(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입자, 납입기한, 납입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분임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광고료납입고지와 납입) ① 시장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광고료는 납입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안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③ 광고주가 납입기한까지 광고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시정소식지 발행일 5일전까지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안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6., 2022. 7. 4.>

[전문개정 2014. 10. 21.]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8.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4. 규칙 제126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26. 규칙 제1580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4. 규칙 제1617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

광 고 료 산 정 기 준

(단위: 원)

구 분	규격(1단)	단 가	1면 전체	비 고 (기준)
표지면	3.3×1㎝	8,000	1,168,000	・월 35,000부 발행 ・1면전체: 146단
기타면	3.3×1㎝	6,500	940,000	

※ 발행부수 5,000부 초과 발행 시 마다 1단에 500원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21.>

명 예 기 자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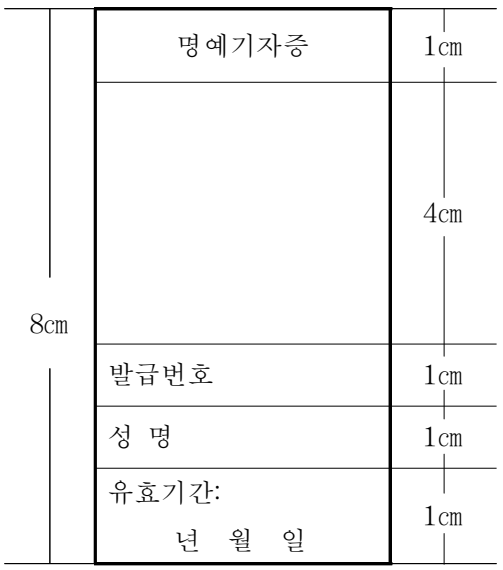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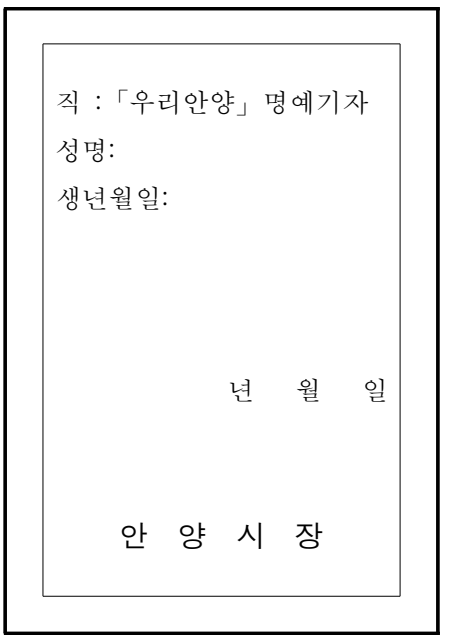

○ 규 격: 5 × 8㎝

○ 재 질: 120g/㎡ 백색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이 정한 신분증 전용색상 및 도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21.>

명 예 기 자 증 발 급 대 장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유효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진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0. 21.>

광 고 게 재 신 청 서

<table>
<tr><td>구 분</td><td>게재일자</td><td>게재면</td><td>광고규칙
(1단: 3.3×1㎝)</td><td>광고단가
(1단당)</td><td>광고료</td></tr>
<tr><td rowspan="4">광고
신청
내용</td><td></td><td></td><td>단
㎝</td><td>원</td><td></td></tr>
<tr><td></td><td></td><td>단
㎝</td><td>원</td><td></td></tr>
<tr><td></td><td></td><td>단
㎝</td><td>원</td><td></td></tr>
<tr><td></td><td></td><td>단
㎝</td><td>원</td><td></td></tr>
<tr><td rowspan="2">광고주
(의뢰인)</td><td colspan="2">주 소 (상호)</td><td>성 명</td><td colspan="2">생년월일</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광 고
수주자</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6">「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0. 21.>

광고게재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광고주			광고신청내용				광고료 납부확인	게재 여부	결재		
	주소	성명	생년월일	게재 일자	게재면	광고 규격	광고료			광고 담당	홍보기획 팀장	실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5.>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홍보기획관 주관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과 장		납입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등기	년 월 일	인
계		고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연도		(관)	(항) (목)	

일금

납입자 주소명		대사
적 요		일수 인부 별등 징기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21.>

납 입 고 지

납 입 고 지 서		
제 호	연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	

납 입 고 지 서			
제 호	연도		
(관)	(항)		
(목)			
일금			
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납부자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납 입 고 지 서		
제 호	연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